

의 정 정 보

2008 - 6

6. 10.

1. 최근 선거법 관련 질의·회신 자료	1
2. 최근 주요 제·개정 법령	12
3. 최근 타 시·도 제정조례	31
4.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 관련 동향	38
<부록> : 행복한 책읽기	59

최근 선거법 관련 질의·회신 자료

1 예비후보자공약집 발간비용의 선거비용 해당여부 등

《질 의》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 및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60조의4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발간·배부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공약집의 제작비용 및 판매수익의 회계처리 등 기타 궁금한 사항에 관하여 질의하오니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예비후보자공약집 발간비용이 선거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예비후보자공약집 발간비용이 선거비용인 경우 보전대상 선거비용에 해당 여부
3.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하여 일반서점과 같은 오프라인서점 나열판매 및 온라인서점 판매시 아래와 같은 통상의 신규서적 홍보방법으로 이벤트 등의 홍보행사를 할 수 있는지?
4. 예비후보자공약집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하고 방문판매의 방법으로는 판매할 수 없는바, 선거사무소 앞 등 거리에 가판대를 설치하고 판매할 수 있는지?
5. 가판대에서 판매를 할 수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예비후보자공약집을 판매할 수 있는지?
6. 예비후보자공약집을 한두권이 아니라 대량구매를 원하는 경우 판매를 하여도 되는지 여부
7.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한 경우 출판기념회 개최가능여부
8. 당해 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이전 군수의 실정을 문제삼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예비후보자공약집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 선거법상 허용되는지 여부 (2008. 4. 4. 조영식·2008. 4. 9. 정혜영 질의)

《답 변》

1. 문 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60조의4에 따라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배부하려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하는바, 예비후보자공약집이 판매된 경우에는 그 발간에 소요되는 비용을 판매금액을 통하여 충당하게 되어 예비후보자가 부담한 비용으로 볼 수 없고, 판매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예비후보자공약집의 발간비용은 선거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임.

2.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서점에서 신간서적 홍보·판매방법과 같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단순히 예비후보자공약집을 소개하거나 할인판매행사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예비후보자공약집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광고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93조에 위반될 것임.

3. 문 4·5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60조의4에 위반될 것임.

4. 문 6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제한되지 아니함. 다만, 예비후보자공약집을 구입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것은 그 행위양태 및 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60조의4·제93조·제115조 또는 제254조 등에 위반될 것임.

5. 문 7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 9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전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6. 문 8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의 선거공약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이를 벗어나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4에 위반될 것임. (2008. 5.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② 정당의 모바일투표 통신비용 부담

《질 의》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나라당에서 실시하는 당내 선거(디지털정당위원장 선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내 선거에 사용되는 모바일투표시스템을 수신자(정당) 부담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신청선거인단의 휴대전화로 모바일투표시스템 접속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선거인단이 연결버튼을 누르면 모바일투표시스템에 접속

○ 모바일투표시스템 접속시 요금발생 (2008. 5. 13. 한나라당 사무총장 권영세 질의)

《답 변》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 따른 당직자 선출을 위한 선거를 모바일투표의 방식으로 실시하는 경우 그 선거인의 모바일투표를 위한 통신비용을 정당이 부담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2008. 5. 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③ 출향인사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홍보 서한문 발송

《질 의》

일선 구청(부산광역시 영도구청)에서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서한문을 발송하는 것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우리구 출신이 타 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각계각층의 출향인사들을 파악하여 구청소식을 홍보하고, 고향에 대한 향토애 고취 및 구청 개발에 참여할 기회제공 등을 도모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구청장 서한문을 제작하여 관할구역 밖의 전국각지에 살고 있는 출향인사 400여명을 대상으로 서한문을 5월~6월 발송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가 아직 2년 이상 남아있고, 선거와 무관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 서한문 주요 내용

○ 서한문 발송배경 설명

○ 영도구청 장기발전 개발계획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설명

○ 영도구 관할지역 홍보 (2008. 4. 30. 박기정 질의)

《답 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귀문과 같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배부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86조제5항의 규정이 적용될 것이므로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2008. 5. 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회답)

4 당협위원장 활동평가를 위한 정기여론조사

《질 의》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나라당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소에서는 245개 당원협의회별로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 여론을 파악하고 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이하 당협위원장) 활동을 평가하는 정기 여론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 여론조사 실시목적

○ 현 당협위원장의 활동은 정당지지도 상승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당협위원장이 실제 활동을 잘하고 있는지를 시계열로 평가함으로써 각 지역별 여론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이 같은 목적의 당협위원장 활동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한나라당 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음.

□ 조사설계

○ 일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ARS를 이용해 당협별로 표본수는 1,000여개로 조사설계함.

○ 표본추출은 한국통신 전화번호부를 이용해 무작위방식으로 진행되며 1년에 2분기 또는 4분기별로 실시할 예정임.

□ 설문내용(별첨참조)

○ 설문은 가안으로서 「인사말, 성, 연령,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지역주민 주요 관심사, 당협위원장 인지도, 당협위원장 활동평가, 정당지지도, 직업, 소득, 종교, 맺음말」 순으로 구성될 예정임.

□ 여론조사 결과보고

○ 여론조사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내부 참고용 자료로서 중앙 핵심당직자에 한해서만 보고 될 예정임.

□ 질문내용

○ 여의도연구서에서 실시할 정기 여론조사에 대한 법적검토

○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및 재·보궐선거가 있을 경우 선거일 기준으로 언제까지 본 정기 여론조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검토

○ 기타 참고해야 할 사항 (2008. 5. 8. 재단법인 여의도연구소 소장 서병수 질의)

《답 변》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다만,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이르러서는 아니될 것이며, 공표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08조를 준수하여야 할 것임. (2008. 5. 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5 보전비용으로 의정보고서 제작비용 지출

《질 의》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총 1억원 정도 (후보자자산으로 약 4,000만원, 후원금·정당지원금으로 약 6,000만원) 에 대하여 보전청구하였고 2008. 6. 8까지 보전받을 예정입니다.

한편, 예비후보자등록(2008. 1. 9) 이전에 의정보고서를 제작하였으며 그 경비(약 3,500만원 정도)를 미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보전받는 비용 중 후보자자산으로 지출한 비용(약 4,000만원)을 공제한 잔액(약 6,000만원) 중에서 위 미지급된 의정보고서 제작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8. 5. 8. 국회의원 장복심 질의)

《답 변》

귀문의 경우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인 선거에 입후보하여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에 따라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경우 그 보전받은 비용을 당해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에 소요된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2008. 5. 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6 행정구역 변경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공표

《질 의》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공표의 기준은 전년도 12월 31일로 하게 되어 있고 공표는 매년 1월 1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08년 1월 1일 행정동 통폐합 및 행정구역 변경이 있었으며,

2008년 7월에도 행정구역 변경계획이 있는바 주민소환 투표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공표는 행정구역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공표 가능한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표 기한(2008. 1. 10)전에 행정동 관할구역이 변경(2008. 1. 1)된 경우 처리방법 포함] (2008. 1. 4. 광진구청장 질의)

《답 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과 같이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주민소환 투표청구권자 총수와 읍·면·동별 서명인수의 산정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 (2008. 1.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7] 국회의원의 사회단체에 대한 후원금 기부

《질 의》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매한 윤봉길의사 기념사업회는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법인으로서 윤봉길 의사의 유업을 선양하고 민족정기를 고양하기 위해 1965년에 설립된 단체임.

작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회장에 있었고, 현재 김학준(동아일보 사장)이 회장을 맡고 있으며, 서초구 양재동에 사무실을 두고 있음.

상기 단체는 올해 윤봉길 의사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윤봉길의사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회를 발족하였고, 정몽준 의원에게 후원금을 요청하였음.

1. 현재 정몽준 의원은 위 단체에 어떠한 직도 맡고 있지 않은 상태임. 정몽준 의원이 위 단체의 직을 맡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위 단체나 사업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함.

2. 또한 위 단체의 직을 맡고 난 후, 후원금을 기부하는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함. (2008. 5. 22. 국회의원 정몽준 질의)

《답 변》

문 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입후보를 예정하고 있는 선거의 선거구안에 있는 단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단체가 아니라면 무방할 것이며, 선거구안에 있는 단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그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라 무방할 것임. (2008. 6.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8 아름다운가게에 입후보예정자의 자서전 기부

《질 의》

깨끗한 선거문화정착과 민주정치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선거법에 관련한 질문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지난 제18대 총선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험이 있는 정치인이 자신의 저서(자서전 다수)를 ‘아름다운가게’에 기부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선거법에는 고아원이나 양로원 같은 사회공익성격을 띠고 있는 단체에는 기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름다운가게’에도 기부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아름다운가게’는 재단법인 아름다운재단 산하에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로서 전국 각 지역에 운영중인 아름다운가게 매장을 통하여 시민들로부터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기증받아 이를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단체를 돕는 활동을 함. (2008. 5. 22. 송승의 질의)

《답 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 마목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제5항제3호 나목에 따라 무방할 것임. (2008. 5. 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9 정당을 공식 방문하는 외빈에게 기념품 제공

《질 의》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나라당에서는 당을 공식 방문하는 외빈에게 기념품을 제작하여 나눠주고자 합니다. 아래의 질의 내용에 선거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을 공식 방문하는 외빈(외국 국적 보유자)에게 한나라당을 상징하는 기념품을 제작하여 당 방문시 기념으로 나눠주려고 합니다.

1. 위 사항에 선거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
2. 기념품 제작에 내용·비용 등 제한이 있는지 여부 (2008. 5. 26. 한나라당 사무총장 질의)

《답 변》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이며, 그 기념품에 게재하는 내용이나 제작비용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 (2008. 5. 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10 지방의회의원이 대표자인 회사의 사업광고 등

《질 의》

귀 위원회의 일익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국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회사는 지방의 조그만 건설회사(법인)입니다. 대표자는 현직 기초단체 시의원입니다. 그런데 여러 곳(동창회, 장애인협회, 향우회, 친목회, 지방 소규모 축제 등)에서 광고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러한 단체의 회보 등에 회사명(대표자의 성명·사진 제외)으로 광고할 경우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지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 동창회 : 본인의 졸업여부와 관계없이 회비 및 광고 가능여부
- 장애인협회 : 고문으로 있는 경우 회비 및 광고 가능여부
- 향우회·친목회 : 회비 및 광고 가능여부
- 지방의 소규모 축제 : 광고 가능여부 (2008. 5. 26. 유한회사 진남개발 대표이사 박정채 질의)

《답 변》

1. 회비납부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제2호 마목에 따라 무방할 것임.

2. 광고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법인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대표자를 선전하는 내용 없이 선거와 무관하게 통상적인 사업광고를 하는 것은 업무상의 행위로서 무방할 것임. (2008. 6.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Ⅱ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의 지역위원회위원장 취임

《질 의》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귀 위원회에 경의를 표합니다.

통합민주당 법률구조위원회에서는 전국 245개 지역위원회위원장 선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리오니 신속히 검토하여 우리당 법률구조위원회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민주당 전국 245개 지역위원회위원장 선출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위원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지 여부. (2008. 5. 23. 통합민주당 사무총장(대행) 김영주 질의)

《답 변》

귀문의 경우 정당의 당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정당의 당직에 취임하는 것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상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활동을 함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9조 또는 제86조 등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2008. 5. 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자료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

최근 주요 제·개정 법령

①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0779호, 2008. 05. 09. 공포]

1. 개정이유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도축업·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허가에 있어서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의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조건부영업허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개정(법률 제8757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한편, 닭, 오리고기의 포장유통대상을 확대하고, 영업의 종류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축산물 포장유통 대상 확대(안 제12조의3제1항)

- (1) 축산물의 유통과정에서 재오염 방지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닭, 오리고기의 연간 1일 평균 도축수가 8만 이상인 도축업 영업자를 대상으로 2007년 1월부터 포장유통을 시행하고 있는 데, 축산물 위생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도축업 영업자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2) 축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닭, 오리고기의 포장유통 단계별 확대 계획에 따라 포장유통 의무가 있는 영업자는 연간 1일 평균 도축수 8만 이상에서 전년도 연간 실제 도축한 일수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이상 도축업 영업자로 확대함.
- (3) 닭, 오리고기 포장유통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축산물의 안전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신설(안 제21조제6호마목 신설)

- (1)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영업의 종류에 「식품위생법」의 유통전문

판매업에 해당하는 영업형태가 없어 각 유통업체에서 자사브랜드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축산물가공품이 영업신고 없이 유통·판매되고 있음.

- (2) 유통업체가 자사브랜드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축산물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타인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 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신설하여 신고하도록 함.
- (3)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신설하여 관리함으로써 유통과정에 있는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를 통하여 축산물의 안전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6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0780호, 2008. 05. 01. 공포】

1. 개정이유

자율적이며 개방적인 벤처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창업투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을 완화하고, 창업투자회사의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참여 요건을 변경하는 등 벤처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창업투자회사의 행위 제한 규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창업투자조합의 거래 금지 대상 확대(안 제10조제4항제2호)

- (1) 현재는 같은 창업투자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인 창업투자조합 사이에만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나, 창업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자금이 창업투자조합

외의 조합이나 회사에 출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창업투자조합의 거래 금지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2) 창업투자조합의 거래 금지 대상에 같은 창업투자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이거나 업무집행사원인 한국벤처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추가함.
- (3) 창업투자조합의 투명한 운용을 통하여 조합 출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투자 질서를 정립할 것으로 기대됨.

나. 창업투자회사의 경영참여 요건을 사전 신고사항에서 사후 준수사항으로 전환(안 제10조제4항제6호)

- (1) 현행 규정은 단순히 투자대상기업의 업력(業歷)을 기준으로 7년 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참여는 조건 없이 허용하고, 7년 초과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참여는 중소기업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투자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2)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업력별 차별을 없애되, 경영 참여 후 6개월 동안 주식 매각을 금지하고, 7년 안에 보유 주식을 전부 매각하도록 의무화함.
- (3) 중소기업의 경영 효율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면서도, 창업투자회사의 단기차익 추구하고 영구적 경영 지배를 막을 수 있음.

다. 창업투자조합의 최소 결성규모 확대(안 제14조제1항제1호)

- (1) 현행 창업투자조합의 결성 요건은 과거 투자자 참여가 낮았던 상황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창업투자조합의 대형화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2) 창업투자조합의 최소 결성규모를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여 창업투자조합의 결성 요건을 현실화하되, 출자금을 나누어 출자하는 경우에는 최초 출자금을 10억원 이상으로 함.
- (3) 대규모 출자가 가능한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창업투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 완화(안 제16조제1항)

- (1) 현행 창업투자조합은 출자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신주 인수 등의 방법을 통하여 투자하여야 하나 기업구조조정조합(출자금의 100분의 40 이상

투자 의무) 등 다른 조합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투자의무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2) 창업투자조합의 신주 인수 등을 통한 투자의무비율을 출자금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40으로 조정하여, 벤처기업의 투자 수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합리적인 규제를 통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시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0782호, 2008. 05. 15. 공포]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환경의 훼손이나 사행성의 우려가 없는 청소년게임제공업소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될 수 있는 기준을 현행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에서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하고, 현행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유원시설업의 시설 중 물놀이형시설을 규모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운동시설로 분류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시설로서 가족단위 또는 청소년 놀이문화 공간으로 유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0783호, 2008. 05. 19. 공포]

1. 개정이유

대부분의 농업인이 농작물재해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에 감자·콩·양파·고추 및 수박을 추가하고,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에 감자·콩·양파·고추 및 수박 추가(안 제6조)

- (1) 감자·콩·양파·고추 및 수박은 재배농가수, 전업화 수준 및 보험가입 의사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손해평가 및 보험요율 산정에 있어 다른 품목에 비하여 보험화 여건이 갖추어져 있어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2)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에 감자·콩·양파·고추 및 수박을 추가함.
- (3) 이에 따라 자연재해에 대비한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농작물재해보험의 추가 대상농작물에 대하여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 규정(안 제7조)

- (1) 농작물재해보험에 추가되는 감자·콩·양파·고추 및 수박에 대하여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를 농업인의 대상재해 확대 요구와 보험상품 다양화에 대한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 (2) 감자·콩·양파·고추 및 수박에 대하여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를 밤·참다래·자두와 같이 호우피해·태풍피해·우박피해·동상해·강풍피해

· 한해(旱害) · 냉해(冷害) · 조해(潮害) 및 설해와 그 밖에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등 가능한 모든 자연재해로 규정함.

(3) 이와 같이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상품 개선을 통하여 자연재해에 대비한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0784호, 2008. 05. 19. 공포]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서민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출퇴근 시간대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에서 20킬로미터 미만의 구간을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10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는 통행료를 20퍼센트 감면할 수 있도록 하되, 이 중 3명 이상이 탑승한 승용차, 16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및 2.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는 시간대별로 통행료를 50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⑥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0789호, 2008. 05. 21. 공포]

1. 개정이유

시장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산업표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 협력기관이 산업표준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택배 등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서비스에 대하여도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표준화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486호, 2007. 5. 25. 공포, 2008. 5. 26. 시행)됨에 따라, 산업표준 개발 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서비스의 인증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산업표준화를 위한 기준이나 표준을 정할 때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대상을 구체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표준 개발 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등(안 제18조)

- (1) 지식경제부장관이 산업표준의 제정·개정 등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민간 기관을 산업표준 개발 협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 협력기관으로 지정 신청한 법인이나 단체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경우 산업표준 개발 대상 분야를 정하여 협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협력기관에 대하여는 산업표준 개발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3) 앞으로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 연구소, 협회 등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민간기관을 활용하여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산업표준을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한국산업표준과의 부합화를 위한 협의 대상의 구체화(안 제20조)

- (1) 법률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표준화를 위한 기준이나 표준을 정할

때 한국산업표준과 부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협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지 않음.

- (2) 관련 분야에 한국산업표준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달리 기준이나 표준을 제정하는 경우, 한국산업표준을 인용하고 있는 기준이나 표준을 달리 개정하는 경우 등을 그 협의 대상으로 정함.
- (3) 이에 따라 각종 기준이나 표준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여 산업표준의 통일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790호, 2008. 05. 26. 공포]

1. 제정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등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영유아 때부터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법률 제8483호, 2007. 5. 25. 공포, 2008. 5. 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의 실시시기(안 제2조)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의 실시시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2010학년도부터는 만 5세 이상 유치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 2011학년도부터는 만 4세 이상 유치원 과정, 2012학년도부터는 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에 까지 차례로 확대 실시 하도록 함.

나. 의무교육의 비용(안 제3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무교육을 위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로 하고, 그 외에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 할 수 있게 함.

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을 위한 진단·평가(안 제9조)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안의 보육 시설·유치원 및 학교의 영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수시로 실시 하고, 선별검사를 한 결과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등이 있는 경우 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특수교육대상자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진단·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 유예 등(안 제14조)

- (1)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를 유예받거나 면제받으려는 보호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하되, 유예기간은 1년 이내로 함.
- (2)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의 면제 및 유예의 결정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받을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마. 순회교육의 운영(안 제20조)

순회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되, 순회교육대상자의 상태 및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도록 하여 학교에 출석할 수 없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제공하도록 함.

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안 제22조)

- (1)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당 1명을 배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도시와 농·산·어촌 교육의 균형발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 현황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별 교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단위 학교·학급별 교사는 해당 교육감이 배치 기준의 4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함.

- (2) 특수교육대상자와 교육환경에 적합하게 특수교육담당교사의 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⑧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0802호, 2008. 06. 05. 공포]

1. 개정이유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대체지 지정제도를 없애고, 농림수산물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거친 경우 농업진흥지역 해제 시 다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등 농업진흥지역 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농지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해 농지전용허가권한의 위임범위와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과 농업인 편의시설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시 대체지 지정제도의 폐지(현행 제28조제2항 삭제)

- (1) 농업진흥지역을 개발용지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새로운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게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대상 농지확보가 어려움.
- (2) 농지전용 등으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대체지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대체지 지정 부담을 완화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시·도지사의 자율적 농업진흥지역 해제권한 확대(안 제28조제3항제2호)

-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지역·단지 등 안에서 시·도지사가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다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행정지연 및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지역·지구·구역·단지 등 안에서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이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도록 함.

다.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설치 면적 제한 완화(안 제29조제2항제1호)

- (1)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부지의 면적에 제한이 있어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의 규모화가 곤란함.
- (2)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부지의 면적을 3천 제곱미터 미만에서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함.
- (3) 이와 같이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설치 면적 제한이 완화되면, 농촌활력증진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시·도지사의 농지전용 허가권한 확대(안 제71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 신설)

농업진흥지역 밖이면서 계획관리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에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농지전용 허가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모두 위임하여 농지전용 절차를 간소화함.

마. 농업인이 농지를 출자·임대하는 방식으로 체육시설의 개발사업에 참여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면제(안 별표 2 제61호란 신설)

- (1) 농촌지역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와 같은 개발이 이루어져도 농업인은 농지매각 대금 외에 개발이익을 얻기 어려움.
- (2) 농업인이 골프장·승마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에 농지를 출자 또는 임대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 출자분 또는 임대분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함.

- (3) 이와 같이 농업인이 농지를 출자 또는 임대하여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0803호, 2008. 06. 05. 공포]

1. 개정이유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법률 제8781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되어 법률 제명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뀜에 따라 이 영의 제명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바꾸고,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신청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방법 추가(안 제3조제3항)

- (1) 현행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직원연수, 조회 또는 회의 등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방법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을 추가함.
- (3) 이와 같이 현행 집합 교육 외에 인터넷을 통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방법을 추가함으로써 기업의 교육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절차 마련(안 제15조)

- (1) 법률의 개정으로 3세 미만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는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신청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그 단축 예정일 30일 전까지 해당 영유아의 성명과 생년월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개시 및 종료 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의 육아휴직에 준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함.

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거부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안 별표 제3호부터 제6호까지)

근로자가 고객 등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거나 고객 등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준 사업주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3일의 휴가를 주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3.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10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법률 제9101호, 2008. 06. 05. 공포]

1. 제정이유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그동안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 50% 정도 수준에 불과하여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바, 이는 여성의 임신·출산·육아 부담에 따른 경력단절과 노동시장 이탈, 하향취업 그리고 재취업의 어려움 등에 그 원인이 있다 할 것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인턴취업의 지원,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력단절여성등의 정의(안 제2조)

이 법의 적용대상인 경력단절여성등을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정의함.

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등(안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함.

다.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및 제5조)

여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함.

라. 인턴취업지원(안 제11조)

여성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여성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인턴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인턴취업지원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안 제13조)

여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정보·취업 및 복지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1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15호, 2008. 05. 27. 공포]

1. 제정이유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7696호, 2005. 11. 8. 공포, 2006. 5. 9. 시행)되어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인증신청 절차 등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실시와 관련하여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의 지정(안 제3조)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인증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 및 업무 수행체계, 8명 이상의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후 인증기관을 지정하도록 함.

나. 친환경건축물 인증 및 예비인증의 신청(안 제6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 제1항)

친환경건축물 인증의 신청은 건축공사가 끝난 후에 할 수 있으나, 그 이전에 건축물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임.

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심사(안 제7조)

인증기관은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할 때 인증심사단에 의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와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인증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증심의위원회는 다른 인증기관의 심사전문인력을 포함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함.

라. 인증의 취소 및 재심사 요청(안 제9조 및 제10조)

인증기관은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등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고,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2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9호, 2008. 05. 19. 공포]

1. 개정이유

의약품의 품질 개선과 소비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약품의 품목허가와 제조업허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8643호, 2007. 10. 17. 공포, 2008. 4. 18.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한편, 동물 약국 개설등록 신청과 일반 약국의 동물용의약품 판매신고 시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일반동물의약품등 생산·수출입 및 판매실적 보고의무를 완화하며, 동물용의약품등의 회수, 동물용의약품등의 광고의 범위 및 동물용의약품등의 폐기 및 공표 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물 약국 개설등록 신청과 일반 약국의 동물용의약품 판매신고 시 구비서류 간소화(현행 제3조제1항제3호 삭제 및 안 제3조제2항)

- (1) 종전에는 동물 약국 개설등록 신청과 일반 약국의 동물용의약품 판매신고 시 약국의 구조 및 시설 개요서까지 제출하게 하여 민원인이 불편을 겪는 문제점이 있었음.
- (2) 동물 약국 개설등록 신청 시와 일반 약국 개설등록자의 동물용의약품 판매신고 시 구비서류 중 개설하고자 하는 동물약국의 구조 및 시설 개요서를 폐지함.
- (3) 불필요한 시설 규제를 완화하여 민원인의 자율적인 영업활동을 촉진함.

나. 동물용의료기기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 신설(안 제13조의2제2항, 안 별표 6의2 신설)

- (1) 동물용의료기기의 시설기준은 종전에는 「약사법」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인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에서 정하였으나, 「의료기기법」 제정으로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동물용의료기기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를 정할 필요가 있음.

- (2) 동물용의료기기의 제조품목 또는 수입품목을 신고하려는 자 또는 동물용 의료기기수리업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를 정함.
- (3) 동물용의료기기의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를 정함으로써 동물용의료기기의 관리수준 제고 및 업계 발전이 기대됨.

다. 동물용의료기기 취급자등의 준수사항 신설(안 제2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신설)

- (1) 「의료기기법」의 위임에 따라 동물용의료기기 취급자등의 준수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자, 수리업자 및 판매업자에게 동물용의료기기의 시설 및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할 것 등 판매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정함.
- (3) 동물용의료기기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가 기대됨.

라. 동물용의약품등 생산, 수출입 및 판매실적 보고의무 완화(안 제26조제1항 본문)

- (1) 종전에는 국가검정동물용의약품(생물학적제제) 또는 동물용항생·항균제와 같은 특수한 경우 외의 동물용의약품의 경우에 매 반기별로 보고의무를 부과하여 동물용의약품 생산자와 판매자가 불편을 겪는 문제점이 있었음.
- (2) 동물용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업자,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의 수입자, 동물용의료기기의 제조업자 및 동물용의료기기 수입업자의 일반동물용의약품등 생산, 수출입 및 판매실적 보고의무 주기를 매 반기별에서 매 연도별로 변경함.
- (3) 규제완화를 통하여 동물용의약품등의 생산자 및 판매자의 불편을 최소화함.

마.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자와 수입자의 회수 등 신설(안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 신설)

- (1) 「약사법」의 위임에 따라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동물용의약품

등의 회수계획과 회수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자나 수입자의 회수계획 제출, 회수계획 공표 및 회수제품의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3) 체계적인 회수절차 마련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가 기대됨.

바. 동물용의약품등의 광고의 범위 등(안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1)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의 위임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등의 광고의 범위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 동물용의약품등의 광고 매체와 수단, 광고 시 준수사항과 광고 심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단체를 세부적으로 정함.
- (3)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선택권 행사가 기대됨.

사. 동물용의약품등의 폐기 및 공표명령 절차 신설(안 제51조의2 신설)

- (1)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의 위임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등의 폐기 및 공표명령 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물용의약품등의 위해성 등급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의약품등의 회수와 폐기등 조치를 명하도록 함.
- (3) 공중위생상 위해 방지 및 소비자 보호가 기대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제2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와 제42조제2항제3호,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자료출처 : 법제처, <http://www.moleg.go.kr/>]

최근 타시·도 제·개정 조례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성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337
----------	-----

발의년월일 : 2008년 5월 19일
발 의 자 : 김재경 의원 외 6인

1. 주 문

-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의 우수한 R&D 인프라와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최소 투자로 최단 기간에 최대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충청권에 조성하여 줄 것을 건의함.

2. 제안이유

- 가. 국가의 정책사업 목표에 적합하고, 기술혁신 역량 및 경제성 측면에서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는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하여 최대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나. 그 당위성으로 충청권은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전국 최고의 R&D기능과 생산·비즈니스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산업의 최대 집적지역으로써 세계적인 기업들을 유치하고,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하는데 최적의 장소임.
- 다. 충청권은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수도권의 고급 과학기술인력이 1시간 이내에 출퇴근이 가능한 그 어느 지역보다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의 확보가 용이함.
- 라. 충청권은 사통팔달의 광역교통망을 보유한 국토의 중심지로서 가장 효과적으로 산업기능 지원이 가능한 지역이며,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새로운 국제생산 및 교역중심지로 등장하는 등 국제비즈니스에 적합한 최적의 지리적 이점을 지니고 있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성 촉구 건의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발표한 과학기술분야 공약사항 중의 하나로, “대덕특구 + 행정도시 + 오송·오창”을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묶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건설을 통해 충청권을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하여 세계 5대 과학기술 대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이렇듯 국가와 지역의 미래 사활을 결정하고,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가장 최적의 장소에 구축되어야 하며, 동시에 최소투자로 최대효과를 낼 수 있는 전략적 위치에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에 반드시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 당위성으로는

첫째, 충청권은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신성장지역으로써 세계적인 기업과 연구소들을 유치하는데 매우 유리한 지역입니다. 충청권은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행정도시, 오송·오창산업단지 등에 IT, BT, NT, 의료 등 첨단지식 산업분야의 R&D 기능과 생산, 비즈니스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산업의 최대 집적지역으로써 세계적인 기업들을 유치하고,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하여 사업화하는데 최적의 장소입니다.

둘째,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에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소들을 중심으로 고급인력들이 연구개발에 몰두하고 있으며,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수도권에 고급 과학기술인력이 1시간 이내에 출·퇴근이 가능한 등 그 어느 지역보다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의 확보가 용이한 지역입니다.

셋째, 충청권은 사통팔달의 광역교통망을 보유한 국토의 중심지로서 가장 효과적으로 산업기능 지원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충청권은 서해안 개발의 연계축으로 중요성을 지니고 있고, 수도권과 거대 도시축과 경부축, 호남축을 잇는 간선교통축의 중앙에 입지하여 도시개발 및 교통·물류의 중심축으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새로운 국제생산 및 교역 중심지로 등장하는 등 국제비즈니스에 적합한 최적의 지리적 이점을 지니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렇듯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대덕특구의 우수한 R&D 인프라와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최소 투자로 최단 기간에 최대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충청권에 반드시 조성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중심으로 지역별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적극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충청권은 파워-존(Power-Zone)으로써 대한민국의 성장축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서북권벨트 추진을 통해 광역경제권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에 대한 밑그림과 추진 실체도 갖추고 있지 않는 등 사업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발표를 지연시키고 있어 지역간 불필요한 논쟁과 갈등을 조장시키고 있는 것은 물론, 사업추진에 대한 의구심마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역간 불필요한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당초 대통령이 공약한대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조성을 조속히 발표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모두는 150만 대전시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부처장관들은 국가의 정책사업 목표에 적합하고, 기술혁신 역량 및 경제성 측면에서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는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하여 행정도시 건설과 대덕특구 육성 등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건의 드립니다.

2008. 5. 21.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자료출처 : 대전광역시의회, <http://council.metro.daejeon.kr>]

② 한·미 쇠고기 협상 전면 백지화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203
----------	-----

발의연월일 : 2008. 4. 25. 2008.

발 의 자 : 황병순·강종문·정환대·신윤식·고송자
김석원(해남)·송주호·이기병·고택윤·이동권·이탁우·
윤시석·김병욱·구충곤·이영윤·임홍빈·홍이식·김철주·
김성호·조상래·이민우·강우석·박찬수(23인)

1. 주 문

“별첨과 같음”

2. 제안이유

- 지난 4월 18일 한미 양국간 고위급 협의결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1·2단계로 나누어 30개월 미만 뼈를 포함하여 연령 제한없이 전면 허용하겠다고 발표함.
- 최근 사료값 폭등 영향으로 경영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허용은 축산업 붕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함에 따라, 전체 축산농가를 살리고 국민의 생명권을 함께 지킬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국민건강 및 검역주권을 포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 확대를 즉각 철회하고 축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 분석하여 재협상에 임해야 함.
- 축산농가 소득 감소분에 대한 농가소득보전직불제 도입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사료가격안정기금 마련,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경쟁력제고, 가축질병예방 및 피해농가에는 충분한 피해보상책 등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함

4. 참고사항

- 결의안 : 별 첨
- 결의안 통보처 : 국회, 청와대, 농림수산식품부, 정당대표

한미 쇠고기 협상 전면 백지화 촉구 결의안

정부는 지난 4월 1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한미 양국간 고위급 협의결과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방안에 대하여 양측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합의 내용은 1단계로 30개월 미만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이 허용되고, 2단계로는 미국이 사료금지조치 강화시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연령제한 없이 전면 수입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그동안 정부는 머리뼈, 척수 등 특정위험물질(SRM)의 경우, 광우병 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결론에 따라 수입을 전면 금지해 왔다. 하지만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성급하게 협상을 진행하여 뼈를 포함하여 연령제한없이 수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국민건강과 검역주권, 그리고 국내 축산업을 아예 포기하겠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와 쇠고기 협상 등을 연계해 쇠고기 시장개방을 꾸준히 압박해 왔는데,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전면 허용은 미국측에 모든 것을 내어주는 꼴로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며 앞으로도 미국에 계속 끌려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사료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한미 쇠고기 협상타결 영향으로 인해 소는 물론 돼지 등 여타 가축의 산지 가격이 폭락하고 있으며, 시장에서 거래마저 한산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국내 축산업이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우사육 농가를 비롯한 전체 축산농가를 살리고 국민의 생명권을 함께 지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아래와 같이 마련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 국민 건강을 무시하고 검역주권을 포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를 즉각 철회하고, 국내 축산농가 피해 및 축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 분석한 후 재협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최근 발표된 축산농가를 위한 정부의 보완대책을 보면 원산지단속, 품질고급화 장려금지급, 시설현대화 등 종전에 시행해 오거나 이미 법제화된 내용으로 알맹이 없는 생색내기에 불과한 바, 소득 감소분에 대한 농가소득보전직불제 도입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3. 축산물 생산비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료의 가격안정 기금마련 등을 통한 원가절감과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바꿔 국내 축산물의 생산 및 소비경쟁력을 높이고 쇠고기 이력제 조기 정착, 모든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표시제 의무시행 및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수입 쇠고기가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라.
4. 아울러 광우병, 브루셀라, AI 등 가축 질병예방 및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국민건강을 철저히 지키고, 가축질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 농가에는 현실에 맞는 충분한 보상책을 강구하라.

2008. 4. 30

전라남도의회 의원 일동

[자료출처 : 전라남도의회, <http://www.jnassembly.go.kr>]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 관련 동향

① 정부·기업·언론이 손잡고, ‘경제활력 찾기’ 나선다

행정안전부·매일경제, 현장 아이디어 발굴 국민제안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
주요 국정현안의 하나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손잡고 국민·기업의 창의적인 현장 아이디어를 정책 또는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국민제안 운동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와 매일경제(회장 장대환)는 5.13일(화) 오후 매일경제 미디어센터에서 국민의 창의적인 현장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경제활력 찾기 국민제안 운동」을 함께 추진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르면, 양 기관은 향후 1년간 4가지의 추진사항에 대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이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민과 기업의 아이디어 발굴 △현장 아이디어 바탕으로 불합리한 제도개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제안의 실현 △국민제안운동 홍보 및 우수제안자 표창 등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우수 아이디어의 정책 반영 및 제도개선 관리, 정부 포상 등을 실시하고, 매일경제는 언론사로서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전문패널 운영 및 현장 아이디어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과정 홍보, 각종 이벤트 행사 등을 펼칠 계획이다.

이 운동은 생활 현장에서 국민이 느끼는 불편사항이나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민·관이 공동협력하여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숙성과정을 통해 제도 개선으로 직접 연결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경제살리기와 관련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국민 또는 기업은 15일부터 ‘국민 제안 운동 제안창구(www.reco.or.kr)’를 통해 패널로 참여할 수 있다.

이 사이트에 제출된 아이디어에 대해 1만명의 국민패널과 500개의 기업패널이 참여하여 현장 아이디어의 발굴 및 숙성·토론을 벌이게 된다.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하여 격월로 주제를 달리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각 행정기관에서는 우수제안에 대하여 표창을, 행안부에서는 중앙 우수제안에 대해 정부포상과 최고 800만원의 부상금을 지급한다.

※ 매경에서도 별도로 문화상품권·시상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원세훈 행안부 장관은 “새 정부의 정책기조가 현장의 목소리를 중시하는 만큼 국민·기업의 현장 아이디어가 경제 활력 찾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경제 분야에 전문성이 높은 매일경제와 한마음으로 지혜를 짜내 성공적인 민·관 협력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② 주민등록 말소제도 폐지 등 추진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법 개정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민등록 말소제도 폐지 >

주민등록 되었던 자가 거주지의 이전 등으로 거소가 불명확할 경우 읍·면·동 사무소에서 이들의 주소를 직권으로 말소처리 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해제, 건강보험 자격정지, 선거권 및 의무교육 권리 등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어, 이러한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거주불명자의 주소를 주민등록지 읍·면·동 사무소로 직권이전 관리하여 주소를 계속 갖도록 함으로써 말소에 따른 문제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 전국 읍면동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 가능 >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이동한 후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읍·면·동에서만 전입신고를 하도록 하여 일상 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었으나 전입신고를 전국 읍·면·동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하고, 주민등록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위임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기존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에서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까지 위임 범위를 확대하여 신고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 가족간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 제한 >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에 있어 가족간에는 위임장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다른 지역에 거주하여도 가족이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족 중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 및 교부신청을 할 수 없도록 지정하도록 하였고, 또한 이혼한 자와 세대를 달리하는 직계비속에게는 이혼한 당사자의 주민등록 초본에 한하여 교부토록 하여 재혼가정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위임장 없이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를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동일제적 내의 가족”에서 “세대주의 배우자와 세대주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 세대주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으로 한정하여 가족간 개인정보가 과다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 주민등록법 위반 벌칙조항 신설 >

다른 사람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대가를 받고 해당 정보를 알려주는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다른 사람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및 부정사용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개정안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며, 앞으로도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민등록제도가 국민생활 편의위주로 운영되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③ 전국 간판 430만 개 중 51% 불법

- 행정안전부,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 -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 주관으로 전국 시군구에서 실시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결과, 전국의 간판은 총 434만 개이고 이 중 불법 간판이 220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대비 전국적으로 광고물 숫자는 31% 증가했고(332만 개→434만 개) 지역별로는 울산(88%), 경기(57%), 인천(50%), 경남(48%)에서 광고물 수량의 증가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광고물은 2001년에 비해 3.4배 폭증(64만 개→220만 개) 했고, 전남과 제주에서 불법광고물이 20배 이상 늘어나는 등 도시화에 따라 지방의 불법 비율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말 현재 시도별 불법광고물 비율은 서울 및 6대광역시 중 부산(50%)과 대전(38%)을 제외한 나머지 대도시에서 전국 평균 불법비율(51%)을 상회하였고, 도 단위에서는 전북(22%), 경북(33%)의 불법비율이 가장 낮은 가운데 경기(57%), 충북(58%), 경남(53%)은 전국 평균보다 불법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광고물의 구체적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220만 개 불법광고물 중 법적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허가·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불법이 된 광고물이 55%(121만 개)를 차지했다.

나머지 100만 개는 수량초과(16%), 설치장소 위반(11%), 규격위반(8%) 등 원천적으로 법에 위반되는 광고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불법광고물이 범람하는 데는, 먼저 담당공무원 1인당 광고물 수의 과다(평균 4천 개), 경쟁적으로 많이 달고 크게 하려는 간판문화 및 의식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또한, 법적으로 5㎡이하 가로형 간판은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어 그 보다 규격이 큰 경우에도 허가·신고를 하지 않는 등 법 준수 의식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10년까지 불법광고물 완전 정비를 목표로 1단계로 전국 일제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08.6~12월)을 운영기로 했다.

- 대상 : 총 220만개(요건구비 불법광고물 121만개, 원천 불법광고물 99만개)
- 요건구비 불법광고물은 자진 신고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제재를 면제하고 허가신고 처리
- 원천 불법광고물은 시정·보완 후 신고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제재를 면제하고 허가 신고 처리
- 신고기관 : 전국 시·군·구 옥외광고 업무 담당부서

자진신고기간 내 미정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집중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형사처벌 등을 통해 강력하게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이행강제금(500만원 이하), 형벌(징역 1년 이하 등)

행안부는 불법광고물의 신규발생 근절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광고물에 허가번호 등을 표시하는 실명제를 금년 말부터 시행하는 등 법적·제도적 개선·보완조치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④ 정부혁신관, 정부전시관으로 거듭 난다.

- 정부수립 60돌 '역대정부 변천사' 전시 -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층의 정부혁신관이 정부전시관으로 개편돼 5월 21일(수) 개관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중앙청사 1층 로비 개방에 맞춰 그동안행사·홍보 중심으로 운영해온 정부혁신관을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상시적으로 관람할 수 있는 정부전시관으로 바꿨다.

정부 전시관은 기존 정부혁신관의 전시공간과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기존 혁신 홍보물을 역대 정부의 발전과정으로 대체하였다.

정부전시관은 정부역사와 전자정부 2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정부역사 부분은 정부수립 후 우리 역사를 4개 기간(건국기, 산업화기, 민주화기, 선진화기)으로 분류하여 주요 사건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건국 이후 공화국별 국정지표, 국민총생산, 국가예산, 공무원수 등 역대 주요 지표를 게시하였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국새 및 대통령 서명코너에서는 방문객들이 역대 대통령의 서명을 수첩에 스탬프로 찍을 수 있는 체험코너를 마련하였다.

전자정부 부분은 다양한 정부 서비스 및 미래모습 등을 소개하는 공간으로 기존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에 정부혁신관을 정부전시관으로 개편함으로써 앞으로는 정부역사와 같은 상시적 주제와 함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부현안을 시의적절하게 게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⑤ 자치단체 예산절감 아이디어 만발

절감 예산 중 3조 9천억원 지역경제, 서민생활안정에 재투자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가 권고한 지방예산 절감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경쟁적으로 창출하여 실천에 옮기고 있다.

지난 4월 행정안전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천명한 지방예산 절감은 예산사용에 낭비요소가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서, 절감된 재원을 경제살리기·서민 생활안정·일자리 창출 등 꼭 필요한 곳에 100% 재투자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지방예산 절감은 중앙에서 일률적인 기준과 목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특성과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있다.

각 시·도, 시·군·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산절감 활동의 주요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계약·설계방식 개선을 통한 절감사례

서울시는 계약심사과를 설치하여 토목·건축 등 각종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철저한 원가심사를 통해 예산절감 및 계약관련 전문성을 제고

‘03~’07년간 총 1만여건 10.2조 규모 사업을 심사하여 총 8,500억 절감 (매년 심사요청액의 8~10% 수준 절감 효과)

경기 오산시는 매년 시행하는 소규모사업에 대해 공무원 자체설계단을 구성 운영하여 ‘00~’08년까지 총 10억원의 설계비를 절감

② 유사·중복된 시설·행사 통폐합을 통한 절감사례

충남 금산군은 노인·장애인·복지회관·청소년수련관·체육센터·보건소 등 7개 기관의 12개 보조사업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건립(금산다락원) 함으로써, 건축비 21억 및 연간 3억의 운영비를 절감

경남 남해군은 남해보물섬 마늘마라톤대회와 창선·삼천포개통기념 하프 마라톤대회 등 행사를 통합 개최하여 행사비 1.7억 절감

③ 기관간 업무협조를 통한 절감사례

강원 영월군은 상수도 도수관로사업을 관내 환경관리공단의 하수도 관로 매설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군 사업비로 편성된 굴착비용 등 13.5억 절감

부산시는 공유수면 매립에 필요한 토사를 당초 거리가 먼 체육공원에서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자치구와 협의하여 인근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활용함으로써,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던 토사운반비용 등 약 7억 절감

④ 제도·시스템·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절감사례

전북 전주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비례제(일률적 수수료 부과방식에서 배출량에 따른 부과방식으로 전환)를 도입하여 음식물쓰레기 20%를 감량하고 연간 처리비용 15억을 절감

대구시는 상수도 사용량에 대한 검침고지를 사용량에 관계없이 월별 추진해 왔으나, '08년부터 월사용량 100m³ 미만 급수전에 대하여는 격월로 조정함으로써 연간 검침 위탁경비 약 8.1억을 절감

⑤ 민간위탁·민자유치를 통한 절감사례

경남 사천시는 상수도 운영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지난 2년간 인건비 6억 절감, 유수율 제고로 24억 절감

대전시는 도시철도 1호선 주변 주차난·불법주차 문제 해소를 위한 주차장 건립을 민자유치를 통한 BTO 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건축비 등 140억 절감

한편, 각 자치단체별로 예산절감 추진상황 설명회, 관계기관 간담회, 민간전문가 초빙강연, 민·관합동 TF 운영 등 예산절감·재투자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면서 적극적인 자구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지사 주재 실국별 예산절감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를 초빙하여 예산절감방안을 강구

강원도는 예산낭비요인 발굴 T.F팀을 구성(공무원, 관련전문가 등 20명), 낭비적·비효율적인 요인을 발굴하며 토론을 거쳐 대안을 제시

전국 추계를 보면 '08년 예산집행 과정에서 총 5.1조를 절감할 예정이다. 절감내역은 기관내부 운영을 위한 경비 3,500억,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계약방식 효율화 등을 통한 사업비 절감 3조 등이며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제고, 세외수입 확충 등 수입증대가 8,700억, 공사·공단, 출연·출자기관 등 예산외의 절감액이 7,200억 이다.

절감액 5.1조 중 3.9조에 대해서는 지역경제살리기·서민생활안정·일자리창출 등의 분야에 중점 재투자할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1.2조는 재투자 계획 수립중)

우선 재투자 재원의 약 66%인 2.6조는 지방 SOC, 산업진흥 및 지방산업 단지 조성, 중소·벤처기업 지원, 관광·문화산업 진흥 등 지역경제살리기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 시·도의 지역경제살리기 분야 재투자 사업 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부산, 100억), 신일반산업단지 조성(울산, 108억), 지하철1·2호선 전기배선 등 기능보강사업(대구, 30억), 송도해안도로 개설 (인천, 147억), 김치산업 육성(광주, 10억), 한우·돼지 사료자금 시설 지원 등 농업경영안정화대책(강원, 8억), 한우클러스터 사업 지원(경남, 12억), 정보 통신 매카트로닉스 산업비 지원(대전, 72억) 등

서민생활안정 분야에는 저소득층 지원과 노인 등 취약계층 복지시설 건립 등에 3천여억원이 재투자 된다.

* 시·도의 서민생활안정 분야 재투자 사업 예시

제2시립 노인치매병원 건립(인천, 31억), 노인건강타운 건립(광주, 17억), 지방의료원 시설장비보강(강원, 34억), 경로당 건립 및 개보수(경남, 23억)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업대책·중소업체 인력지원과 직업교육·평생학습체계 구축 등에 580억원이 재투자될 예정이다.

* 시·도의 일자리창출 분야 재투자 사업 예시

중소업체 인력지원 등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전북, 10억), 청년실업해소 및 맞춤형교육(경남, 39억), 중국어마을 조성 및 인재양성 지원(충북, 80억) 등 이 밖에도 환경보호, 초·중등교육, 재난방재 분야 등에도 총 9천여억원을 재투자할 계획이다.

앞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추경편성과 지방의회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심의과정 중에 지역특성에 따라 일부 재투자계획은 변경될 수도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절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6월부터 예산절감 추진 지원단을 운영하여 중앙·지방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절감·낭비사례를 발굴·점검하도록 할 예정이다.

둘째, 예산절감 마인드와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전국에 산재한 다양한 예산절감 사례들을 매뉴얼화하여 보급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알리고 자치단체들 간에 상호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셋째, 예산절감과 관련 자치단체가 스스로 하기 어려운 각종 법령 개정이나 중앙부처와의 제도개선 협의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예산절감 효과가 큰 계약 제도를 중점적으로 개선해갈 계획으로

있으며,

- * 시·도별 계약심사와 설치, 공사·용역에 대한 원가심사 강화
- * 장기공사의 계속비 예산편성 의무화, 공기단축이 가능한 사업은 채무 부담행위로 우선 추진하는 방안 활성화
- * 유사·중복 시설의 통합발주, 사용빈도가 높은 공통물품의 공동구매 제도 등 활성화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제도 개선, 포괄보조금 도입 등 국고 보조사업 제도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중이다.

- *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을 정산·반납하지 않고 유사사업 등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고보조사업 분야에서도 자치단체의 창의적 예산절감 유도

- * 부처별로 중복적으로 추진되거나 규모가 영세하여 실효성이 낮은 사업을 통폐합하여 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따라 사업을 선택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

끝으로, 예산절감 및 경제살리기 등 투자실적이 우수한 단체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앞으로도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금년부터 지속 추진될 예산절감 활동을 통해 그동안 예산낭비 요인으로 지적되어온 정치적 고려에 따른 소규모 분산투자, 관례 답습적인 공무원의 업무자세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예산 절감 활동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마인드를 통해 관례 답습적인 예산사용 관행을 바꾸어 국민세금을 알뜰하게 쓰는 시스템을 갖추는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자치단체마다 재정규모와 여건이 다르므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목표와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보행자 · 장애인 중심의 안전도로 만든다

- 행정안전부, 안전도로 만들기 민관 T/F팀 구성·운영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안전사고 사망자 중 비중이 높고 후진국형인 보행자 사망사고를 우선적으로 줄이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고 본격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 「안전도로 만들기 T/F팀」 참여기관(총 11개 기관)

- 행정안전부, 경찰청
- 지자체: 서울시, 경기도, 경상북도
- 시민단체: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한국생활안전연합
- 전문기관: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행안부는 중·장기적으로 안전사고 사망자를 절반(3만명 ⇒ 1만5천명)으로 줄인다는 목표 하에 경찰청과 지자체, 시민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 총 11개 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도로 만들기 T/F팀」을 구성, 5월 26일(월) 발족한다.

「안전도로 만들기 T/F팀」은 보행자 안전실태 진단 및 대안모색, 보행자 안전도로 구축을 위한 국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자료 조사, 안전도로 만들기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기본방침 및 추진계획수립, 안전도로 만들기 사업에 소요되는 자원 확보방안 등을 모색한다.

행정안전부는 2001년 이후 연간 평균 2천 8백여 명의 보행자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로의 열악한 보행환경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보행환경 개선은 지방자치 사무에 해당되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안전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행안부는 보도 설치, 폭원 확장, 각종 장애물 제거, 무분별한 도로 점용을 차단하고, 차도와 보도가 겹치는 구간을 포함하는 보행자 도로에 대해서는 보행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보행자 안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민·관 전문

가 공동 T/F팀에서 추진하기로 하였다.

안전도로 만들기 사업은 지역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도시부 간선도로 38,188km와 지방부도로 52,357km를 구분하여 추진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소요되는 매년 7천억 원의 예산 확보 방안도 T/F팀에서 모색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박일범 안전개선과장은 “지하철, 공공건물 등에는 장애인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데 반해, 대부분의 도로는 장애인이 다닐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며 “장애인과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 만들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7 u-Health 서비스 시범 운영

- 취약계층 및 독거노인 건강상태 원격 모니터링 실시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공동으로 취약계층과 독거노인에 대해 u-IT 기술을 활용한 무료 원격 진료를 실시하는 「u-Health 서비스」 사업을 시범 실시하기로 하고, 총 29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u-Health 서비스」 시범 사업은 65세 이상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독거노인 u-Care 시스템 구축 사업」과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 두 가지로 진행된다.

「독거노인 u-Care 시스템 구축 사업」은 동작감지, 출입감지, 환경감지 등 집안 내에 감지 센서를 부착해 독거노인의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독거노인 5,000여명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원격 건강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은 의료 취약계층,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원격진료, 방문간호, 재택건강 관리 등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8개월간 진행될 「u-Health 서비스」 시범 사업은

중앙정부(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매칭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시범 사업은 생체정보측정센서, 동작감지센서, 무선통신 기술 등 최신 u-IT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의료취약계층을 해소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해, 사용자 중심의 공공의료서비스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u-Health 서비스」는 의료취약계층, 만성질환자, 독거노인에게 능동적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사업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재택 건강 관리 등에 대한 검증을 통해, 타당성이 입증될 경우 향후 관련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u-Health 분야의 산업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⑧ 환경부, 맑고 깨끗한 도랑 만들기에 나선다.

- ◇ 도랑치고 가재 잡던 옛 모습 재현을 위해“도랑 살리기”활동을 전개기로
- ◇ ‘12년까지 오염된 500개소의 도랑을 선정, 주민 자율의 정화활동과 생태복원 사업을 추진 <.TBODY/>

- 환경부는 생활하수, 쓰레기 등으로오염되거나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로 인해 훼손된 마을 주변의 도랑을 정화하고 가재, 다슬기 등이 살아 숨쉬는 도랑으로 복원하기 위해 ‘한국의 도랑 살리기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밝혔다.
- 마을 주변 도랑은 하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과 투자가 미흡하여 수질오염과 쓰레기 방치 등으로 예전의 빨래하고 가재잡던 모습을 상실함에 따라
-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 민간 주도로 도랑 정화활동과 생태복원 사업을 체계

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국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였다.

- ‘도랑 살리기 추진계획’은 전국의 도랑을 가재가 서식하는 환경으로 조성한다는 목표 하에, ‘12년까지 4대강 유역의 도랑 1,000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오염·훼손된 도랑 500개소를 선정하여 자율적인 정화활동과 생태복원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를 위해 환경부·유역환경청, 환경단체, 지자체가 참여하는 추진사업단을 구성하여, 전국적인 확산과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하며
- ‘12년까지 4대강 유역의 오염 및 훼손된 도랑 1,000개소(’08년 150개소)에 대한 수질오염 및 생태계 훼손여부 등 실태조사를 환경단체 주관 하에 추진하고
-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500개 도랑을 선정(’08년 20개소), 도랑 내·외의 쓰레기 및 하상퇴적물 수거 등 정화활동과 마을 하수도, 차집관거 설치, 정화식물 식재,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 등 생태복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 환경부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마을 공동체 활동으로 자율적인 정화·복원체계를 구축한 경우 필요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우수마을 지정, 성공사례 발굴전파, 자발적 모니터링, 참여기관 간 협약 체결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나갈 계획이다.
- 환경부는 도랑 정화활동 및 생태복원 사업을 통해 그동안 방치되어 왔던 도랑을 “도랑치고 가재 잡던 옛 모습”으로 복원함으로써 하천 상류에서 하류까지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자연이 어우러진 하천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9 지진,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나 내진대책 차질 없이 추진 중

- '08.5.12일 중국 쓰촨(四川)성을 강타한 규모 7.8의 강진으로 최소 5,000여명 사망, 1만여명 부상자가 예상 되는 등 인명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 우리나라는 지구의 판구조론에 의한 판 경계선상에서 벗어나 있어 비교적 지진 안전지대로 분류되고 있으나,
지진사례를 보았을 때, '78년 홍성지진(규모 5.0)이후 현재까지 규모 5.0이상의 지진 5건(최대: 규모5.2, '78 속리산 지진) 등 중소규모 지진이 간헐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 국토해양부는 '78년 홍성지진 이후 '79년 댐, '85년 터널, '88년 건축물, '92년 교량, '00년 항만시설, '04년 공항시설 등 국가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 평균 규모 6.0의 강진에 대비하여 내진설계를 의무화 하고 있다.
- 또한, 내진설계가 반영이 안 된 기존 국가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내진보강을 시행하고 있다.

댐(28개소)과 공항(15개소)은 이미 설계기준이 적용되었거나 내진성능 평가 결과 안전한 시설물로 판명되었으며

도로와 철도시설의 터널과 교량은 현재까지 전체의 90%에 해당하는 13,576개소에 내진이 적용되었고 나머지 1,515개소는 '10년까지 내진 보강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하철은 총 23개 노선 중 10개 노선은 설계기준이 적용되었거나 내진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나머지 13개 노선에 대해서는 현재 내진성능 평가를

시행 중으로 평가('09년 완료 예정)결과에 따라 '12년까지 내진 보강을 완료할 예정이다.

항만시설의 경우 내진반영이 안 된 총 409선석에 대해 '00년부터 '03년에 걸쳐 내진성능을 평가한 결과 모두 지진 규모 6.0에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아울러 대규모 지진에 따른 재해 발생시 국토해양부 내에 수송, 수자원, 철도, 항만 등 8개 상황반으로 구성되는 “지진재해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지진피해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대비하고 있다.

[지진관련 참고자료]

I. 국내 지진발생 여건

- 지진발생의 주요 학설인 ‘판(板)구조론’에 의하면, 대부분의 지진은 10여개로 구성된 지구표면의 판 경계부에서 발생
 - 일본·터키·그리스 등은 판의 경계에 위치한 지진 위험지역
- 우리나라는 유라시아판 내에 위치,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이나 중소규모 지진이 간헐적으로 발생, 내진대책 필요
 - 년 평균 25회, '78 이후 규모4~6미만 36회 발생

II. 주요 시설물에 대한 내진 적용 현황

- 내진설계기준 적용

- 홍성지진('78) 이후 댐('79부터)·터널('85)·건축물('88)·철도('91)·교량('92) 등 주요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를 의무화
- '95 일본 고베지진 이후 도시철도·공항·수문 등 내진설계 대상시설을 확대하고 내진기준도 상향 조정

□ 시설물별 내진 적용 현황

시 설 물(개소)	전 체	내진반영	보 강 계 획			평가중 (‘08까지)
			합계	‘08계획	‘09~’10	
○ 터 널	1,230	1,065 (87%)	16	-	16	149
- 철 도	580	415	16	-	16	149
- 도 로	650	650	-	-	-	-
○ 교 량	13,852	12,502 (90%)	847	184	663	503
- 철 도	2,704	2,155	46	4	42	503
- 도 로	11,148	10,347	801	180	621	-
○ 댐	28	28	-	-	-	-
○ 공 항	15	15	-	-	-	-
○ 지 하 철(노선)	23	10	13	-	13('12)	13

※항만시설 총 409선석은 '00.5-'03.12 내진성능 평가결과 규모 6.0에 안전 판명
지진의 규모 및 진도

□ 규 모 (M: magnitude)

- 지진 자체의 에너지 크기를 나타내는 절대 수치
- ※ 창안자의 이름을 따서 '리히터 규모'라고 함

□ 진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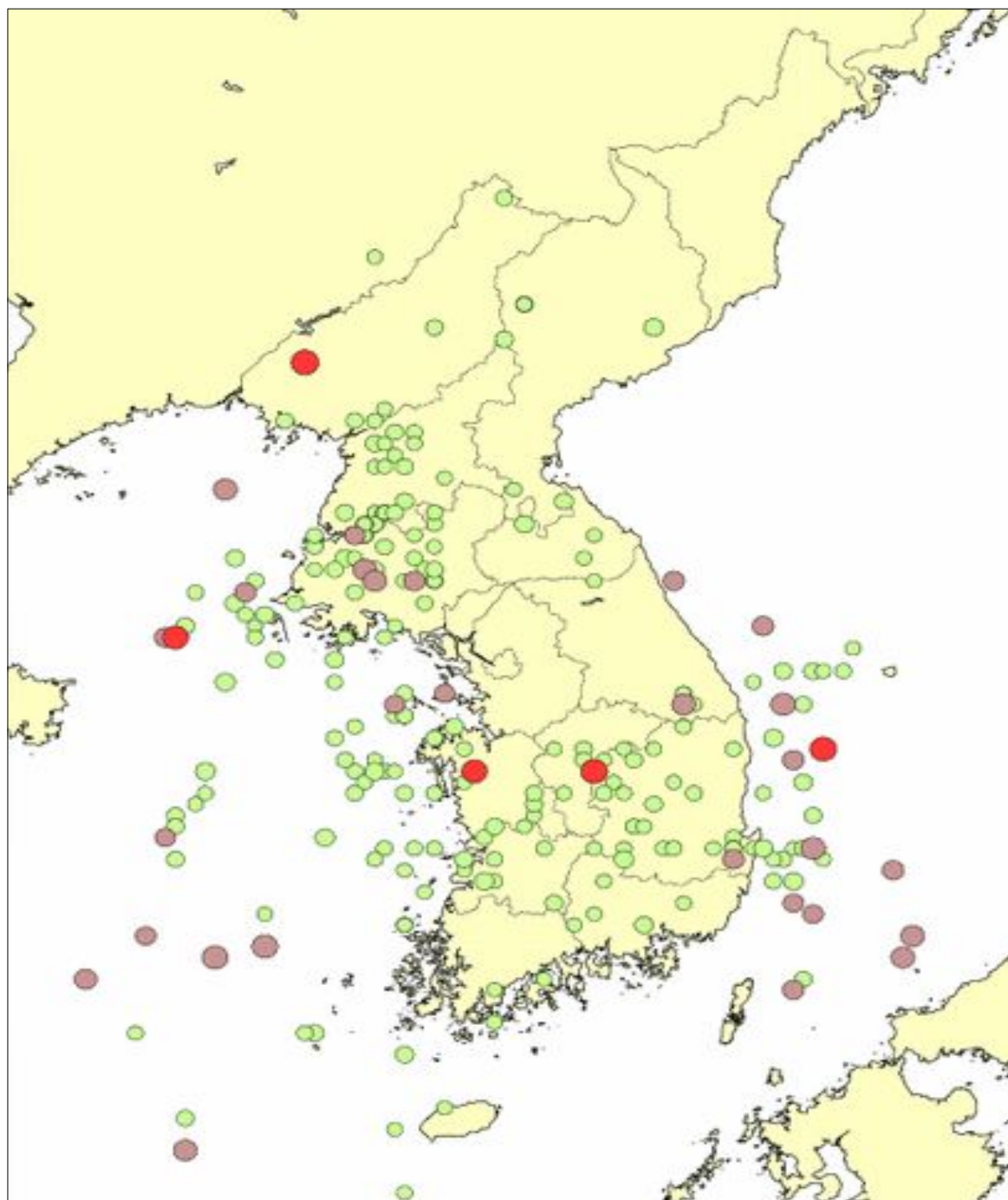
- 위치나 상황에 따라 사람이 느끼는 지진의 상대적 척도
- ※ 일반적으로 지진자체의 크기를 나타낼 때는 '규모'로, 설계기준을 나타낼 때는 '진도'로 표시

□ 지진 규모 및 진도에 따른 구조물·인체 영향

진 도	규모(M)	구조물에 대한 영향	인체 영향
(무감)	2.5미만	없 음	없 음
I (미진)	~ 3.0	미 세 한 흔들림	민감한 사람만 느낌
II (경진)	~ 3.5	창문이 다소 흔들림	여러 사람이 느낌
III (약진)	~ 4.0	매달린 물건이 흔들림	약간 놀람, 자다 깬
IV (중진)	~ 5.0	건물 요동, 꽃병이 넘어짐	매우 놀람, 뛰쳐나옴
V (강진)	~ 6.0	벽에 금이 가고 비석이 전도	서있기 곤란, 공포감
VI (열진)	~ 7.0	산사태, 건물 30%이하 파괴	걸을 수 없음
VII (격진)	~ 8.0	건물 30%이상 파괴	이성 잃음
	8.0 ~	단층 현상, 건물 완파	대 공 황

국내 지진발생 현황 ('78 ~ 현재)

※ 년 평균 25회, '78 이후 4~6규모미만 총 36회 발생



● $3 \leq M < 4$
(208회)

● $4 \leq M < 5$
(29회)

● $5 \leq M < 6$
(5회)

10 공공택지 상업·업무용지 명의변경 제한 풀린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개발 소요기간 3개월 단축

□ 국토해양부는 기업규제 완화를 위해 공공택지에 대한 명의변경제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19일 입법예고 하였다.

□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업·업무용지에 대한 신탁 허용 등 명의변경 제한 완화

- 지금까지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당해 택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상속·이주자택지 등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의변경 등 일체의 매매행위를 금지하였으나,
- 영리 목적의 상업·업무 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신탁회사와 당해 택지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명의변경을 허용하여 상가 수분양자 보호 및 사업지구의 조기 활성화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고,
- 회사분할시 신설회사에 해당 택지가 최초 택지공급가액으로 승계되고, 택지를 공급받은 자의 실질적 변경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설회사로 명의변경을 허용하여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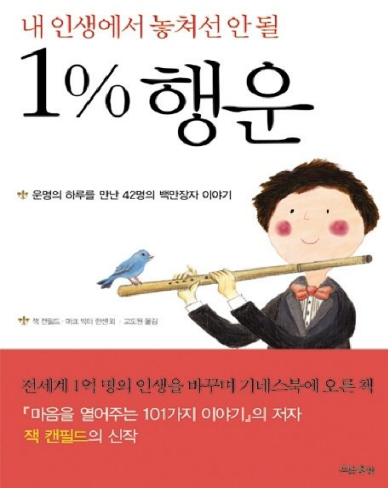
② 택지개발절차 개선

- 현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단계와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모두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어 중복절차가 되므로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의 협의절차를 폐지하였다.
- 이에 따라 개발기간이 약 3개월(약 33개월 → 약 30개월)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5.19~6.9까지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중에 국토해양부(전화 02-2110-8302, 팩스 02-503-3285)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자료출처 : 행정안전부, <http://www.mogaha.go.kr/>]

부록 : 행복한 책 읽기

	도서명 : 1% 행운 저자명 : 잭 캔필드 출판사 : 흐름출판 출판년 : 2008년 페이지 : 303 가 격 : 12,000원
---	--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행운을 만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기네스북에 오른 베스트셀러 ‘영혼을 위한 닭고기수프’ 시리즈로 전세계 1억 명의 인생을 바꾼 잭 캔필드와 마크 빅터 한센이 함께 엮은 이 책은 1% 행운을 통해 운명의 하루를 만난 백만장자들의 가슴 뭉클하고 값진 체험들이 따스하게 살아 숨쉬고 있다.

이 책의 역자이자 〈고도원의 아침편지〉 주인장인 고도원의 말처럼 42명의 백만장자가 좌절, 두려움, 시련을 극복하고 희망을 얻는 과정을 통해 그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풍부한 영감, 누구든 삶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 소중한 지혜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선물한다. 한마디로 말해 딱딱한 원칙이 아니라 따뜻한 이야기로 전하는 잭 캔필드식의 가슴 울컥한 감동과 힘들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열정을 주는 희망 프로젝트!

‘1% 행운’은 눈먼 장님이 아니라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은 영원히 맛 볼 수 없다. 누구나 운기칠삼을 말하고 행운은 노력하는 사람에게만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내 것으로 끌어당기지 못했던 행운! 평범했던 주부에서 친환경 비누 사업가로, 가난한 소년에서 20대 백만장자로, 마비된 몸을 딛고 와인바 사업가로 변신한 사람, 그들은 모두 자신에게 찾아온 행운을 놓치지 않았고 부와 행복을 거머쥐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1% 행운은 ‘마음과 지갑을 채워주는 복리’와도 같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노력이 언젠가는 나의 커다란 성공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실패를 경험했지만 다시 삶의 원동력을 찾으려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책이다.

〈 1% 행운을 끌어당기는 법 〉

1. 함께해서 가능하다
2.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3. 우리는 녹슨 삶을 두려워한다
4. 살아가라,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을 것처럼
5. 가난해도 부자의 눈을 잃지 마라
6. 마음의 소리를 들어라
7. 지금 있는 것들에 감사한다

[자료출처 : 인터넷서점]